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5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이용우・박지원・이수진

이재관 • 한준호 • 김문수

김영환 · 최민희 · 이학영

이광희 · 신장식 · 박홍배

임미애 · 김태선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「헌법」은 "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"를 가지며, "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"한다고 하고 있음. 즉 「헌법」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.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,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. 이에 「최저임금법」을 개정하여, 최저임금제도의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함(안 제3조제1항 단서).
- 나.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함(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).
- 다.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).
- 라.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 삭제함(안 제5조제2항 삭제).
- 마.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함(안 제10조제2 항 단서 삭제).
- 바.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함(안 제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중 "사업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게는"을 "사업에는"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"을 "특정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뒤에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근	제3조(적용 범위) ①
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	
는 사업장(이하 "사업"이라 한	
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하	
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<u>사업과</u>	<u>사업에</u>
<u>가사(家事) 사용인에게는</u> 적용	<u>느</u>
하지 아니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	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
분)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	분) ①
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	
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	
을 고려하여 정한다. <u>이 경우</u>	<u><후단 삭</u>
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	<u>제></u>
<u>할 수 있다.</u>	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	<u><삭 제></u>
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	
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	
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	
제5조(최저임금액) ① (생 략)	제5조(최저임금액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	<u><삭 제></u>
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	

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 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 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 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 다.

③ (생략)

- 제10조(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(생 략)
 - 2.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
 <삭 제>

 별 구분에 관한 심의
 - 3. 4.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
발생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단서 삭제>
제13조(위원회의 기능)
1. (현행과 같음)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19조(전문위원회) ① ------필요하다고 인정하면 <u>사업의</u> -----<u>특정</u>----<u>종류별 또는 특정</u> 사항별로 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-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